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10주년 기념 자료집

우리들의 산재왕국, 실태와 개선방안

2002년 10월

- 인권모임, 걸어온 길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 보고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사례 50선

노동인권회관 · 노동정책연구소 ·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우) 140 - 011

전화 (02) 749 - 6052 / 749 - 8975 팩스 (02) 749 - 6055

E-mail : A0011@chollian.net 홈페이지 : www.inkwon.or.kr

인권정보자료실
Mal.13

LABOR HUMAN RIGHTS CENTER
THE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10주년 기념 자료집

우리들의 산재왕국, 실태와 개선방안

- 인권모임, 걸어온 길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 보고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사례 50선

◆ 차 례 ◆

민주화는

| | |
|--------------------------------|----|
| 외국인노동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 2 |
|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 4 |
| 10년의 아픔은 10년의 희망입니다... | 6 |
| 이주노동자 인권투쟁 | |
| 10년을 기념하며 | 8 |
| 인권모임, 설립에서 지금까지 | 10 |
| 이사진 명단 | 15 |
| 인권모임의 주요활동 | 16 |
| 상담통계(1998.1.1~2002.9.30) | 18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 | |
|------------------|-----|
| 산재피해사례 50선 | 100 |
|------------------|-----|

민주화는 외국인노동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며

박 형규

노동인권회관 3대 이사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시작된 외국인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해 차별적 저임금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와 문화적 차이, 인종적 편견 등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자, 자격외 취업자, 또는 밀입국자는 출입국관리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같은 약점으로 인해 악덕 사업주의 횡포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3십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취업자 3만2천여 명뿐입니다. 4만 명 정도의 연수생을 포함하면 불과 20%정도만이 합법적인 신분이며 나머지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80%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가 노예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단지 그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반성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노예감독자의 위치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한국인 관리자의 의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 국민과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열등민족

과 우등민족으로 구분하는 인종적 편견이 확산되는 상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길인 동시에 한국민의 인권의식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노동인권회관에서 10년 전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을 설립한 취지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압니다. 다행인 점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제도와 의식에서 부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멀고 험한 길을 가야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또한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나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들 스스로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취는 이 땅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공유될 때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홍근수

노동인권회관 이사장/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이제는 달리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족을 등지고 먼 타국에서 힘겨운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꾸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이면에는 전쟁과 기아, 자본의 그악스런 이윤추구가 버티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자본을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로 인해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로운 삶은 위협 당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총 17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2003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25일에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년도의 그 것보다 6.4%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방예산에서 26.4% 이상을 삭감하기를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 가량이 되고 나머지 3조 4천여억 원은 이 땅의 민생복지를 위해 쓰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 삭감일 뿐 목표비율은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 국회에서 다루는 2003년도 국방 예산을 반대한다.

첫째로 이 예산안은 냉전시대의 그것이다. 지금 이 세계는 냉전시대가 아니다. 냉전체제는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에 완전히 의해·붕괴되고 더 이상 없다. 그런데 마치 냉전의 고도(孤島)인양 한반도만 냉전 체제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군사주의 지향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국방비 예산액의 과다나 비율 등을 논하기 전에 우리 나라의 근본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평화를 응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국가를 건립하였지 그 반대로 전쟁을 위해서 존

재하는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예산은 마치도 우리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 것 같은 국방비 예산안이다. 즉 군사주의 지향적인 예산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국방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2년 전 처음으로 우리 남·북의 정상들이 평양에서 선언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을 남북이 각각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남한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은 병력 감축과 국방예산의 감축의 길이다.

군사주의는 대결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총 약 32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총 예산(221억7천379만원)의 14.4%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화로 15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의 국방예산의 260분의 1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천문학적 국방예산액은 삭감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원하는 사람, 평화를 실현하고 이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에 평화 실현을 희구하는 사람, 이 땅의 주인은 다름이 아니라 민중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맥락에서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 핵을 빙자로 하여 미국이 이라크 다음으로 북한을 침공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정부가 국방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세계평화실현을 위해 힘써야 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우리가 전쟁 놀이를 좋아하는 미국을 덮어놓고 모방하거나 따르는 것은 세계인의 적이 되는 길이고 민중의 적인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군축을 촉구한다.

한국은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전세계, 아니 적어도 아시아에서만이라도 평화를 이루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리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이 땅의 민중들의 소박한 삶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 한반도 땅은 민중들의 나라가 되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관이 지배하는 땅이 될 것이다.

10년의 아픔은 10년의 희망입니다.

양 길승

노동인권회관 이사/원진 노동자건강센터 대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행사를 맞아 축사를 부탁 받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을 것인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기에 입이 쉬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서 무지막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축하를 하기보다는 위로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말이 목구멍을 넘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지난 10년은 위로가 아니라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희망을 굳건하게 지켜 우리가 희망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잊혀지고 버려지기 쉬운 인권을 지켜 우리가 같이 누려야할 인권을 바로 세우고 그 인권의 미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널리 알려져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지 오래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차이나타운이 우리 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았을 정도로 배타성이 강합니다. “검둥이” 같은 인종 비하적인 용어를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왜놈”이나 “꾀놈” “양놈”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욕도 거리낌없이 널리 쓰였습니다. 게다가 부와 권력을 가진 선진국에서 온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약자에게 잔인한 군사문화에서 못 벗어난 일부 사람들에 의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거센 반발로 되돌아와 이제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의 봉변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폐어먹기, 산재환자를 치료 안 해 주거나 보상을 안 해주기, 오죽했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때리지 마세요”라는 일상화된 폭행,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이 부끄러운 야만성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아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받아들여 조직적인 지원을 시작한 「외국인 아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은 우리 사회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귀하고 보람있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속의 야만과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함으로서 비로소 외국인을 만나고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시대를 함께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아시아에서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끝난 부산아시안게임이 아시아인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축제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확실히 보장될 노동허가제도가 곧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모든 일은 의당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여 그 값을 치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도 현신성에 의지하여 어렵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을 지키는 일을 같이 해온 많은 분들은 그럼으로 우리의 희망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지난 10년을 같이 축하하고 축하를 받으며 다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 10년을 기념하며

이 광택

노동인권회관 이사/국민대 법대교수 · 산업사회연구소장

“한인광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레클링하우젠 기숙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한인광부들이 “검은 도깨비집”이라고 비꼬는 곳인데, 지금도 한방에 3명씩 살고 있으며, 요즈음 새로 온 터키광부들은 닭장 같은 2개의 이중침대에서 한방에 4명씩 살고 있다. 이곳엔 찬물만 나오며, 한 층에 20명~25명이 사는데 변소가 2개뿐이며, 100명 이상의 식구에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샤워기는 한 둘 뿐이며(이것도 자주 고장) 세탁기도 하나 뿐이다. 건물 바로 곁으로는 3분마다 지나가는 기차소리가 천둥을 치는 것과 같고, 자동차의 소음과 먼지도 이에 못지 않게 시끄럽고 어지럽다.”

위 글은 재독 한인광부 인권협회가 1980년 5월 10일 한국인광부 파송업무의 독일측 당사자인 루르광산(Ruhrkohle AG)측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활동을 개시한 시점인 1992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32개국으로부터 온 61,126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중 약 11%에 해당하는 6,705명은 출국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88년에 불법취업자로 적발된 외국인 수가 258명인데 비추어 보면 엄청난 증가였고 미신고자를 포함하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10만 명대로 추정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시점에서 “불법취업 상태의 외국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줄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후 법정 투쟁을 통해 노동부의 방침을 철회시켰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4차 세계 노동법 및 사회보장 학술대회에서도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1995년에는 노동정책연구소가 독일 Friedrich-Ebert-Stiftung과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33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나라에 취업하고 있지만 이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전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어 실로 감개 무량합니다.

재독 한인광부들의 서명운동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고 독일 정부는 1980년 한인광부들에게 체류 및 노동허가를 무제한 연장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파독 한인광부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18년만의 숙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독일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교훈은 이 땅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그 동안 활동을 집성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은 물론 조합원자격 및 단체교섭의 이익의 향유, 주거시설에 있어서의 차별과 업무상재해보상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이주노동자협약(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Revised) 1949)이 이행될 때까지 한결 같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인권모임, 설립에서 지금까지

○ 설립목적

1992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제 도입을 시작으로 국내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하거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수생의 신분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갖가지 면에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취업중인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들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으며,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적절히 제때에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하다 병들었으면 치료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차별대우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갖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상태는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도적이고 도덕적 가치기준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문명국으로서 국가 상호간의 선린과 우애를 해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는 병들었을 때, 임금이 밀렸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회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담·통역·한국어교육·의료 구조활동, 그리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연구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 발기취지문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취업자들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개 중국 연변,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등지에서 유입되어 섬유, 전자, 건설현장, 서비스업종의 중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은 고용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언론은 사고와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과 간혹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과장보도하기도 합니다.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언어소통의 곤란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차별이 전제된 노동조건(불법취업 또는 '연수'라는 명목은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외에도, 특히 일반 국민들의 문화적 차별과 범죄집단화하는 태도 등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실로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짓밟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작업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불법취업자'라는 제약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여권을 압수해놓고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무차별 구타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적 질병에 걸리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정부는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저임금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고자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과 취업을 사실상 조장하거나 묵

인하여 왔습니다. 또 정부당국과 기업주들은 상대적 고임금을 빌미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부 사람들은 지금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우선 필요하니까 쓰다가 나중에 우리 경제에 필요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쟁출하여 출국시키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이웃 일본의 경우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불법취업을 조장, 묵인하며 열악한 근로 조건과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는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도적이고 도덕적 가치기준을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공개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인력을 수입하거나 불법취업자의 취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경우, 반드시 공정하고 합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일단 국내에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명국으로서 국가 상호 간의 선린과 우애를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로도 그들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적절히 제때에 지급해야 하고, 일하다 병 들었으면 치료해 주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대우도 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뜻 있는 성직자들이 개인적 노력으로 이들을 돋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방대하여 이런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든 자를 돋고, 밀린 임금을 찾는

데 협조하고, 그들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는 일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인권은 한시도 유보될 수 없다는 소박한 생각들로 모임의 원동력을 삼을 것입니다. 또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교수 등은 물론 종교인, 노동자, 학생, 시민 등 뜻 있는 모든 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도 1960년대 광부와 간호원으로 서독에 나가서 일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몇 해전만 해도 사막의 나라 중동 각국에서 일하던 한국노동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외롭고 병들어 지쳐 있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법률상담, 통역과 한국어교육, 의료 구조활동, 그리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연구 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노동자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길 고대합니다.

1992. 5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발기인 일동

○ 설립일자 및 연혁

설립일자 : 1992. 5

연 혁 :

1992. 5. 자양동 성당에서 필리핀 노동자들 상담실시

1992. 5. 이종구 · 신윤환 · 설동훈 · 김민정 · 박석운 발기인으로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대 표 신윤환(서강대 정외과 교수)

소 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1994. 12. 외국인 노동자 핸드북 발간

1995. 3. 17 - 18 외국인노동자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샵 개최

1995.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1995. 4. 4 국내세미나 개최(외국인력 정책과 인권보호대책)

1995. 5. 30 - 31 국제세미나 개최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1996. 2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1996. 3 외국인노동자핸드북(증보판)발간

1997. 5 소식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상' 창간

1998. 7. 1 (사) 노동인권회관의 부설단체로 편입됨.

2002. 2. 외국인노동자 핸드북(개정판) 발간

2002. 3.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상담메뉴
얼' 발간

2002. 4.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

2002. 9. 단체명칭을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으로 개칭.

제 2 대 소장으로 석원정 선출

이사진 명단

노동인권회관/외국인 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이사진

| | | | | | |
|-----|----------|--------|------|-----|-------------------|
| 이사장 | 홍근수 | 전국민중연대 | 공동대표 | 이현범 | 변호사 |
| 홍성우 | 변호사 | | | 한영철 | 의사 |
| 김찬국 | 교수 | | | 황민영 | 농민운동가 |
| 강금실 | 변호사 | | | 고영구 | 변호사 |
| 곽노현 | 교수 | | | 고한석 | 의사 |
| 권인숙 | 설립자/미국거주 | | | 김금수 | 노동운동가 |
| 김록호 | 의사 | | | 김영환 | 국회의원 |
| 김문수 | 국회의원 | | | 박연철 | 변호사 |
| 김식현 | 교수 | | | 박인제 | 변호사 |
| 노병직 | 박사과정중 | | | 신동수 | 사업가 |
| 박덕제 | 교수 | | | 양길승 | 의사 |
| 박성민 | 변호사 | | | 윤진호 | 교수 |
| 박순희 | 천정연 공동대표 | | | 이광택 | 교수 |
| 신윤환 | 교수 | | | 이문령 | 의사 |
| 안영도 | 변호사 | | | 이상수 | 국회의원 |
| 윤종현 | 변호사 | | | 이진순 | 교수 |
| 이삼열 | 교수 | | | 임종률 | 교수 |
| 이석태 | 변호사 | | | 최영희 | 언론인 |
| 이양원 | 변호사 | | | 천정배 | 국회의원 |
| 이영순 | 광역의회의원 | | | 이 광 | 변호사 |
| 이옥경 | 출판인 | | | 정현탁 | 회계사 |
| 이종구 | 교수 | | | 박석운 |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인권 모임의 주요활동

○ 활동내용

(1) 상담활동

상담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취업/거주하면서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본 단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다. 상담의 주종은 체불임금·산업재해·국제결혼·여권관련·귀국관련·의료상담 등이다. 상담활동의 방식은 무료 법률지원과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주,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경찰 등 관련 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직접 접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사·연구·출판활동

매월 소식지 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유용한 자료 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자료 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외국인 이주노동자문제와 관련한 토론회/공청회 등 참여

(3) 연대 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회원단체로서,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제반 공동대책위원회의 회원단체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집회/캠페인/공청회/교육 등 각종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4)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본 단체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전화(1588-1138)'의 가입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지킴이'의 회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 열악한 조건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다민족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활동, 그리고 올바른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후생복지활동

◇ 의료공제조합의 지부활동

의료공제조합은 한국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월 일정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회는 이의 지부로서 활동하고 있다.

◇ 그 외 의류바자회/각종 문화행사 참여/한글교실/무료진료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사업이 있다.

○ 발간자료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핸드북(1994·1995·2002년에 걸쳐 총 3종 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상(월간)

아시아-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1995년 발간)

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1995년 발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상담메뉴얼(2002년 발간)

상담통계 1998. 1.1. – 2002. 9. 30.

총 1,285사례, 총 34개국, 임금체불 90%, 남성 91.5%, 이슬람권 나라 주류 사업내용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인권모임이 서울 자양동 성당에서 최초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을 시작한 때는 1992년 4월부터였으며 인권모임이라는 이름의 상담지원단체를 설립한 때는 1992년 5월이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인권모임을 찾아와 자신들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지원 받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쉽게도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 초창기만 해도 제대로 상담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 상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상담사례들이 관리되기 시작한 때는 대략 1996년 들어서부터였다. 그렇기는 하나 실제로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 때는 아무래도 1998년 들어서부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여 이번 10주년이 되어 유효하게 통계로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1998년으로 잡고 그때이후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만 통계를 내어보았다. 상담사례들을 연도별로 나누고, 월임금, 근로시간 등 몇 가지로 분류하여 나누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유용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그러자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지라 일단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4년 9개월동안 인권모임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는 모두 1,285건이었다. 여기에는 전화상담이나 일회성 상담은 제외하였고, 의료상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담이 접수되고 인권모임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던 사례만 통계로 잡았다. (<표 1 참조>)

< 표 1 >

| 년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총 합계 |
|-----|-------|-------|-------|-------|-------|-------|
| 사례수 | 45 | 175 | 387 | 395 | 283 | 1,285 |

이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 1,176 사례, 여성 109 사례였다. 이를 백분율로 나누면 남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91.5%로 절대다수였으며, 여성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8.5%였다.(<표2 참조>) 이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인 탓도 있겠으나, 특히 인권모임을 주로 찾는 이슬람문화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다 남성들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모임을 찾는 이들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은 인권모임의 사업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일단 수적으로 적게 접촉하다보니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점차 이슬람권에서 온 여성들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인권모임으로서도 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 표 2 >

| 성별 | 사례수 | 백분율 | 총 합계 |
|----|-------|--------|--------|
| 남성 | 1,176 | 91.5 % | 1,285 |
| 여성 | 109 | 8.5 % | (100%) |

사안별로 분류해보면 체불임금 1,157건, 산업재해 109건, 기타 19건이었다. 이를 백분율로 나누면 임금체불사안이 90%로 거의 대다수였으며, 산업재해가 8.5%, 기타사안이 1.5%였다. (<표3 참조>) 기타사안은 여권관련, 폭행, 업체 관련 등의 사안이었다.

< 표 3 >

| 사안 | 사례수 | 백분율 | 총 합계 |
|------|-------|------|--------|
| 임금체불 | 1,157 | 90% | 1,285 |
| 산업재해 | 109 | 8.5% | (100%) |
| 기타 | 19 | 1.55 | |

국적별로 나누어보면 모두 34개국이었다. 가장 많이 인권모임을 찾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서 351사례였다. 이를 백분율로 나누면 27.5%였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란으로서 195사례, 백분율로 보면 15%였다. 그리고 34개국중 20여개국이 이슬람권역에 속한 나라였다. 이는 인권모임이 이태원에 가까이 있는데다 교회나 여타 종교기관에 소속된 상담소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참조>) 현재까지 단 한 명만이 찾아왔던 나라도 6개 나라나 된다.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은 인권모임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권모임으로서는 이슬람권에서 온 이들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들의 문화에 대한 간단한 소양이라도 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평소 생소하던 이슬람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여 활동 가로서는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고 생각한다.

< 표 4 >

| 국적 | 사례 | 국적 | 사례 | 국적 | 사례 |
|--------|-----|--------|-----|-------------|-----|
| 파키스탄 | 351 | 이란 | 195 | 필리핀 | 126 |
| 몽골 | 93 | 방글라데시 | 84 | 이집트 | 80 |
| 스리랑카 | 71 | 인도네시아 | 51 | 가나 | 43 |
| 인도 | 26 | 우즈베키스탄 | 25 | 나이지리아 | 21 |
| 중국 | 14 | 러시아 | 9 | 카자흐스탄 | 9 |
| 이라크 | 9 | 알제리 | 6 | 모로코 | 7 |
| 베트남 | 6 | 모리타니 | 5 | 타일랜드 | 5 |
| 사할린 | 4 | 네팔 | 4 | 튀니지 | 3 |
| 우간다 | 3 | 루마니아 | 2 | 기니아 | 2 |
| 수단 | 2 | 이스라엘 | 1 | 페루 | 1 |
| 아프가니스탄 | 1 | 요르단 | 1 | 부르키나 파르소 | 1 |
| 미얀마 | 1 | 미확인 | 23 | | |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업장의 소재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다. 인권모임이 서울 도심에 있기는 하나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798 사례로서 백분율로 보면 62%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서울은 278사례로 22%였다. (<표 5> 참조) 사업장 소재지가 인권모임이 위치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상담지원활동에 여러 모로 영향을 미쳤다. 일일이 사업장 방문을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방문해야 할 때에도 선뜻 나서기 힘들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효과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가까운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인권모임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가까운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갈 것을 권하게 되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원거리에서 온 상담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해도 지역 상담소의 사정이나 인권모임을 찾아온 이들의 희망을 묵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결국 어려운 대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표 5 >

| 지역 | 사례수 | 지역 | 사례수 | 지역 | 사례수 |
|-------|-----|----|-----|-----|-----|
| 경기도 | 798 | 서울 | 278 | 인천 | 124 |
| 충남 | 27 | 충북 | 20 | 경북 | 14 |
| 대구 | 6 | 전남 | 3 | 경남 | 1 |
| 광주광역시 | 1 | 부산 | 1 | 미확인 | 12 |

이상 간략한 통계를 내어보았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간략한 통계만으로도 그 동안 인권모임에서 진행해온 상담의 성격,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분포를 어느 정도로는 가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의 인권모임의 사업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인권모임에서는 그 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10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머릿글

- I. 서
- II.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실태조사 보고
- III.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의 특징
- IV.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의 문제점
- V. 상담을 통해 본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실태
- VI. 개선방안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이 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은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 소개된 사례들이나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하는 간단한 수치를 통하여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일선 상담지원단체에서는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수없이 접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그 동안 한국에서 취업하는 중에 산재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실태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권모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기획사업으로 수행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45사례, 이중 심층조사가 이루어진 사례 166개로 이루어진 이번의 실태조사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피해에 대한 전체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실태조사로 인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산재가 발생하는 양태, 무엇보다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번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목적이며, 오직 그 하나의 마음으로 길고 힘겨운 조사작업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의 실태조사는 2002년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9월 중순에 조사작업이 끝났고, 설문지 점검작업과 분석작업이 모두 끝난 때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총 7개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말 행복하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설문지 작성작업에는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 · 설동훈 전북대

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도움이 컼습니다.

조사작업에는 이화여대 국제자원봉사단 EIV의 여러분들 - 인현정·노정희·김명진·이효선·장수연·고영은·인정·서채원·문은영씨와 인권모임의 자원활동가 이지인·허준석·박연경씨가 헌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경조병원·두손병원에서는 실태조사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또 눈코뜰새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번의 실태조사를 도와주신 수도권 지역의 상담지원단체들, 갈릴래아·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대한성공회 마석 샬롬의 집에 대한 감사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석작업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책임연구원께서 연구와 강의에 바쁘신 중에도 마다 않고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짐필작업은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작업을 결코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면을 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의 실태조사가 모쪼록 이 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10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석 원정

I. 서

1.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산재보상보험법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당시만 해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내의 인식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이 당시 한국에서 취업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그 치료와 보상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양심에 달려 있었고,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잔존장애에 대한 보상은 생각도 하기 힘들었다.

이런 현실을 참다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1994년 경실련 강당에서 전격적으로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가 비로소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네팔 등 각국에서 온 미등록노동자들의 14일간에 걸친 농성으로 드디어 미등록노동자에게도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이른 바 불법체류자보다 합법체류자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전된 상황이 그저 넘어가질 리는 없는 법. 이듬해인 1995년,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은 명동성당에서 쇄사슬을 몸에 감고 농성에 들어갔고 비로소 산업연수생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해도 산재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었기에 산재피해를 입은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했고, 설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해도 산재가 발생한 후 지원단체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요청서를 내면 하루 아침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해버리기 일쑤였다.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용사업장에 산재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면서 일단 법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반화되었다. 현재는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에게는 여전히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산재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업주들의 산재은폐로 인해 많은 경우가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혹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는 등의 사례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

2.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피해에 대해서는 일선 상담지원단체들로부터 풍부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단순통계로 처리한 사고실태 역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양태·이들의 애로사항·산재예방에 필요한 조건·산재사고 후 필요한 조치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에서부터 치료종결과 재취업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실태가 조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실증조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재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끌어내고자 이번의 실태조사를 실사하게 되었다.

3. 실태조사 방법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중 산재를 입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였다. 거기에 조사의 목적을 치료중인 사람만이 아니라 치료 및 모든 절차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기에 대상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조사였다. 이에 인권모임에서는 대상자들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와 병원을 통해서 접근하기로 하였고,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먼저, 조사원이 병원을 찾아가 입원중인 산재피해자를 직접 면접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둘째, 상담지원단체에서 기왕에 진행하였던 산재상담자료를 제공받아 기본적인 사항을 설문지에 기재하고, 이후 본인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방법.

셋째, 상담지원단체를 방문하는 산재피해자를 면접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조사 방법은 설문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한·영문 두 종류로 작성되었으며, 조사를 위해 소정의 관련 교육을 받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사원을 투입하였다.

설문은 일반적인 조사와 심층조사를 나누었으며, 일반조사는 관련 자료만으로 기재가 충분한 부분을 의미하며, 심층조사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문항에 대한 조사를 의미한다.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분리하여 만들지는 않았으며, 하

나의 설문지에 일반조사와 심층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모든 절차가 끝난 사례의 경우 귀국하거나 연락처가 변경되어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설사 전화연결이 되더라도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전화인터뷰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는 점이다. 또 한번의 전화인터뷰로는 부족하여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거된 설문지는 총 585개였다. 이 중에서 면접과 전화인터뷰를 포함하여 인터뷰과정을 거친 설문지는 총 166개였다. 총 585개 사례 중 자료로 쓰기 어려울 정도로 기재가 부실했던 40개 설문지는 폐기하였으며, 분석대상을 545개로 잡았다.

545개 사례는 모두 일반조사자료로 사용하였고 인터뷰를 거친 166개 사례는 심층조사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거된 설문지는 SPSS 윈도우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를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다양하게 주어서 교차분석을 하였다.

5. 분석 결과 서술방법

분석된 내용은 1, 2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부에서는 산재와 직접 관련되는 산재발생의 양태와 재해보상 및 치료과정, 산재관련 정보의 인지특성, 사후관리와 재취업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고, 2부에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과 취업현황을 서술하였다.

산재발생의 양태에서는 산재경험회수·재해의 성격·재해의 원인·재해의 종류·산재 발생의 시각·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입사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치료관련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재해보상 및 치료과정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산재보상보험법 미적용의 이유·산재보상보험의 처리주체·잔존장애 유무·치료비 부담주체·처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산재관련 정보의 인지특성에서는 안전교육 관련·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사후관리에서는 재취업관련·월급여 감소 문제·산재사고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치료종결 후 귀국의지·본국에서의 취업가능성·직업교육의 인지 여부·직업교육의 참여 의지·직업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적특성에서는 성별·국적·산재발생시의 연령·재외동포 여부·학

력·입국시 비자의 성격·산재발생 당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지위(체류자격)·산재피해를 입은 연도·한국어구사능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업현황에서는 산재피해 당시 근무 사업장의 소재지역·업종·사업장의 규모·1일 평균 근로시간·월급여 현황·월 평균 휴일회수·입사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일선 상담지원단체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지원활동가로서 파악한 생생한 현실 경험 역시 이들의 산재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이 보고서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적 보고와 함께 일선에서 산재피해를 입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원활동 경험에서 우러난 보고들을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더불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예방과 산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아울러 서술하기로 한다. II·III·IV은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이며, V는 현장에서의 상담지원 활동 중에 파악된 보고이다. VI에서는 II·III·IV·V의 보고를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과분석과 관련하여, 현재시점에서 역계산을 해야 할 경우도 있었고, 좀더 다양한 조건을 주어서 교차분석을 해보아야 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여 이후를 기약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인 사실에 관해서만 분석하였다. 훗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조사결과를 집대성하여 다시 한번 발표하고자 한다.

II.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실태조사 보고

1부 조사대상자의 산재발생의 영역별 실태

<1> 산재발생의 양태

1) 산재사고를 당한 회수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산재사고를 몇 번이나 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었다. 산재회수가 기재된 387사례 중 96.9%가 산재사고를 한 번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한 후 귀국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많아서인 듯하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나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다가 거듭 산재를 당했던 사례도 있었다. 산재사고를 두 번 경험한 응답자가 11사례, 세 번 당한 응답자도 1사례가 있었다.

<표 1> 산재사고를 당한 회수

| 산재사고 당한 회수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회 | 375 | 96.9 |
| 2회 | 11 | 2.8 |
| 3회 | 1 | 0.3 |
| 합 계 | 387 | 100.0% |

2) 본인 외의 사업장 내 산재경험 회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본인 외에 사고를 당한 사람이(한국인 노동자 포함)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총 91명(전체 응답자 중 58.7%)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66명이 산재 회수에 대한 응답을 하였고 2회 이상이 48.5%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재경험 회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당한 후 귀국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표 2> 본인 외의 사업장 내 산재경험 회수

| 본인외의 산재경험회수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회 | 34 | 51.5 |
| 2회 | 21 | 31.8 |
| 3회 이상 | 11 | 16.7 |
| 합 계 | 66 | 100.0% |

3)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만에 산재사고를 당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는 466사례였다.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은 1.9년이었다. 이 중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산재를 당한 사례가 106사례, 22.7%였고 1년만에 산재를 당하는 사례가 126사례, 27.0%였다. 이 두 사례를 합하면 입국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232사례, 응답자의 49.7%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2년만에 산재를 당하는 사례가 88사례, 18.9%였다. 입국후 2년안에 산재를 당하는 사례를 종합하면 320사례, 응답자 중 68.6%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물정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대개 2년-3년 사이로 잡는다면 이는 한국이나 한국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일수록 산재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장 10년도 있었으며 체류 6년 이상의 경우는 22사례, 4.7%였다.

<표 3>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

|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 기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년 미만 | 106 | 22.7 |
| 1년 | 126 | 27.0 |
| 2년 | 88 | 18.9 |
| 3년 | 61 | 13.1 |
| 4년 | 44 | 9.4 |
| 5년 | 19 | 4.1 |
| 6년 | 13 | 2.8 |
| 7년 | 5 | 1.1 |
| 8년 | 2 | 0.4 |
| 9년 | 1 | 0.2 |
| 10년 | 1 | 0.2 |
| 평균 | 1.94년 | |
| 합계 | 466 | 100.0 |

4) 입사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

현 직장에 입사 후 얼마 만에 산재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39사례였다. 입사 후 1주일 이내에 산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60, 비율로 13.7%였다. 통상 수습기간으로 두는 3개월까지의 기간 중 산재를 당하는 비율이 228사례, 전체의 56.5%였다. 즉 산재피해자의 56.5%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사고를 당하였다.

<표 4> 입사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

| 입사 후 산재발생까지 기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주일 이내(1~7일) | 60 | 13.7 |
| 1개월 이내(8~30일) | 90 | 20.5 |
| 3개월 이내(31~90일) | 98 | 22.3 |
| 6개월 이내(91~180일) | 56 | 12.8 |
| 1년 이내(181~365일) | 65 | 14.8 |
| 1년 초과(366일 이상) | 70 | 15.9 |
| 합계 | 439 | 100.0% |

5)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입국 후 얼마 만에 산재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국적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33사례였다.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평균기간은 1.94년이었는데, 합법체류자(1.41년)의 경우가 불법체류자(2.05년)의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24)

<표 4-1>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응답자수 | 입국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년) | p-value |
|------------|------|-------------------|---------|
| 합법체류 | 46 | 1.41 | 0.024 |
| 불법체류 | 387 | 2.05 | |
| 응답자 합계/평균 | 433 | 1.94 | |

6)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상관관계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256사례였다. 그 결과 한국어구사능력이 우수할수록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평균시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한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입국 후 산재발생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응답에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었던 응답자의 경우 평균 2.34년만에 산재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어에 매우 미숙했던 경우 평균 1.06년만에 산재가 발생하였다. (P=0.001)

7)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1일 근로시간간의 관계

1일 근로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258사례였다. 그 결과

작업시간이 많을수록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평균시간이 짧았다. 특히 1일 10시간 미만 작업자와 10시간 이상 작업자와의 산재발생까지의 기간을 비교한 결과 10시간 이상 작업자(1.70년)가 10시간 미만 작업자(2.26년)에 비해 산재발생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시간이 길수록 빨리 산재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4)

<표 4-2>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관계

| 한국어 구사능력 | 응답자수 | 입국후 산재발생까지 기간(년) | p-value |
|--------------------------------------|------|------------------|-----------------------|
| 한국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 34 | 0.79 | 1.06 0.001 2.34 |
| 한국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 49 | 1.24 | |
| 한국말을 약간 알아들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 44 | 2.68 | |
| 한국말을 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뜻을 대강 전달할 수 있다. | 39 | 2.64 | |
|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 90 | 2.04 | |
| 응답자 합계/평균 | 256 | 1.94 | |

<표 4-3>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1일 근로시간간의 관계

| 1일 근로시간 | 응답자수 | 입국후 산재발생까지 기간(년) | p-value |
|-----------|------|------------------|---------------|
| 8시간 | 20 | 2.25 | 2.26 0.014 |
| 9시간 | 32 | 2.25 | |
| 10시간 | 52 | 2.27 | |
| 11시간 | 47 | 1.89 | |
| 12시간 | 85 | 1.60 | |
| 13~15시간 | 19 | 1.84 | |
| 16~18시간 | 1 | 0.1 | |
| 18시간 이상 | 2 | 1.00 | |
| 응답자 합계/평균 | 258 | 1.94 | |

8)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간의 관계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156사례였다. 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설문지 문항 (28)에서 '충분히 받았다'와 '대충 안전교육을 받았다'에 기재한 사례를 '받았다'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입국 후 더 빨리 산

재를 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53)

<표 4-4>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간의 관계

|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응답자수 |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년) | p-value |
|------------|------|--------------------|---------|
| 받았다. | 67 | 2.19 | 0.453 |
| 전혀 받지 않았다. | 89 | 1.98 | |
| 응답자 합계/평균 | | 1.94 | |

9)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작업의 위험성 인지와의 관계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166사례였다. 설문지 문항 (26)의 '잘 알고 있었다'와 '대강은 알고 있었다'를 '알고 있었다'로 합쳤고 '거의 모르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다'를 '모르고 있었다'로 합쳤다. 그 결과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을수록 입국 후 산재발생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19)

<표 4-5>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작업의 위험성 인지와의 관계

| 작업의 위험성인지 여부 | 응답자수 |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년) | p-value |
|--------------|------|--------------------|---------|
| 알고 있었다. | 75 | 2.36 | 0.119 |
| 모르고 있었다. | 91 | 1.92 | |
| 응답자 합계/평균 | 166 | 1.94 | |

10)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학력간의 관계

피해자의 학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144사례였다.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학력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입국 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이 긴 경향을 보였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입국 후 빨리 산재를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6> 입국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과 피해자의 학력간의 관계

| 학력 | 입사후 산재발생까지의 기간(년) | 응답자수 |
|-----------|-------------------|------|
| 중학교졸업 이하 | 1.79 | 33 |
| 고등학교졸업 | 1.86 | 58 |
| 초급대학 이상 | 2.21 | 59 |
| 평균/응답자 합계 | 1.94 | 144 |

11) 산재발생 시각

산재발생의 시각은 하루 24시간을 넷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응답자는 392사례였다. 그 결과 오후 작업시간에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해서 177사례, 비율로 45.3%가 해당하였다. 연장 혹은 야간작업 중에 산재를 입은 사례도 102사례, 비율로 26%나 되었다.

<표 5> 산재발생 시각

| 산재발생 시각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0시 ~ 8시 | 53 | 13.5 |
| 9시 ~ 12시 | 113 | 28.8 |
| 13시 ~ 18시 | 177 | 45.3 |
| 19시~24시 | 49 | 12.5 |
| 합계 | 392 | 100.0% |

12) 산재사고의 양상

산재사고의 양상에 대해 총 7개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512사례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기계 등에 신체를 낌(협착)것으로 308사례에 비율로 60.2%였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의 경우는 '불/뜨거운 물에 텨·화상'문항에 포함하였다.

<표 6> 산재사고의 양상

| 산재사고의 양상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기계 등에 신체를 낌·협착 | 308 | 60.2 |
| 깔림·압착 | 88 | 17.2 |
| 높은 곳에서 떨어짐·추락 | 46 | 9.0 |
| 불/뜨거운 물에 텨·화상 | 9 | 1.8 |
| 질식 | 0 | 0.0 |
| 타인에 의한 폭행 | 2 | 0.4 |
| 기타 | 59 | 11.5 |
| 합계 | 512 | 100.0 |

13) 산재사고의 성격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534사례였다. 응답

자의 절대 다수인 97.2%가 작업시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작업시간중의 사고에는 '업무상 사고'와 '직업성 재해'의 경우도 포함하였다.

<표 7> 산재사고의 성격

| 산재사고의 성격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작업시간중의 사고 | 519 | 97.2 |
| 작업시간 외 사고 | 11 | 2.1 |
| 행사중 재해 | 1 | 0.2 |
| 타인의 폭력에 의해 다친 사고 | 3 | 0.6 |
| 합계 | 534 | 100.0 |

14) 산재사고가 발생한 원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이었는데 응답자는 364사례였다. '안전장비가 없었다'는 문항에는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답변도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73.5%에 해당하는 262명이 '안전장비가 없었다'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장비(혹은 안전시설)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면, 안전장비가 없어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될 것이다.

<표 8> 산재사고가 발생한 원인

| 산재사고가 발생한 원인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기계 다루는 솜씨가 서툴렀다. | 67 | 29.6 |
| 기계가 고장났다. | 55 | 15.4 |
| 안전장비가 없었다. | 262 | 73.5 |
|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했다. | 21 | 5.4 |
| 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 10 | 2.4 |
|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 3 | 0.8 |
| 동료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 33 | 9.0 |
| 기타 | 77 | 15.4 |
| 합계 | 364 | 100% |

15) 치료기간

산재발생 후 치료기간에 대해 입원치료기간과 통원치료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입원기간에 대해 응답자 387사례 중 57.7%에 해당하는 223사례가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1년이 초과할 정도로 장기입원해야 했던 경우도 6사례가 있었다.

<표 9> 입원치료 기간

| 입원치료기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주일이내(1~7일) | 56 | 14.5 |
| 1개월이내(8~30일) | 167 | 43.2 |
| 3개월이내(31~90일) | 93 | 24.0 |
| 6개월이내(91~180일) | 24 | 6.2 |
| 1년 이내(181~365일) | 15 | 3.9 |
| 1년초과(365일 이상) | 6 | 1.6 |
| 비 해당 | 26 | 6.7 |
| 합 계 | 387 | 100.0% |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응답자 331사례 중 73.3%에 해당하는 243사례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통원치료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통원치료한 사례도 11사례가 되었다.

<표 9-1> 통원치료 기간

| 통원치료기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주일 이내(1~7일) | 20 | 6.0 |
| 1개월이내(8~30일) | 113 | 34.1 |
| 3개월이내(31~90일) | 110 | 33.2 |
| 6개월이내(91~180일) | 28 | 8.5 |
| 1년 이내(181~365일) | 21 | 6.3 |
| 1년초과(365일 이상) | 11 | 3.3 |
| 비 해당 | 28 | 8.5 |
| 합 계 | 331 | 100.0% |

〈2〉 재해보상 및 사후처리과정

16)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여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이 산재피해를 입은 시기와 실태조사시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담지원단체의 협조를 받아 치료종결 이후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 경우도 적용된 경우에 포함시켰다. 상담지원단체를 방문하였던 산재피해자의 대개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태조사시기에 근접할수록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례는 적을 것이다. 응답자는 434사례였는데, 이중 257사례, 59.2%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다.

<표 10>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유무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그렇다 | 257 | 59.2 |
| 아니다 | 177 | 40.8 |
| 합계 | 434 | 100.0 |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응답자의 인적 특성의 관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유무와 인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사고년도/한국어 구사능력과의 관계에서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다른 인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17)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는 397사례였다. 합법체류자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 경우가 17사례, 비율로 42.5%였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 219사례, 비율로 61.3%였다.

<표 10-1>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응답자수 | 보험적용 사례(비율) | p-value |
|------------|------|--------------|---------|
| 합법체류자 | 40 | 17 (42.5) | 0.027 |
| 불법체류자 | 357 | 219 (61.3) | |
| 응답자합계 / 비율 | 397 | 236 (59.2) | |

18)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산재사고 발생년도와의 관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유무와 산재사고 발생년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420

사례였는데, 발생년도가 현재에 가까울수록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62) 산재보상보험법 당연적용범위가 2000년 7월 이후 근로자 1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적용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았다.

<표 10-2>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산재사고 발생년도와의 관계

| 사고년도 | 산재보험 적용 응답자 비율 | 산재보험 미적용 응답자 비율 | 응답자 합계 비율(%) |
|--------------|----------------------|-----------------------|--------------------|
| 1996년 이전 | 6 | 35.3 | 11 64.7 17 100.0 |
| 1997년 ~1998년 | 37 | 56.9 | 28 43.1 65 100.0 |
| 1999년~2000년 | 95 | 60.1 | 63 39.9 158 100.0 |
| 2001년~2002년 | 113 | 62.8 | 67 37.2 180 100.0 |
| 응답자 합계/비율 | 251 | 59.2 | 169 40.2 420 100.0 |

19)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응답자의 한국어구사능력과의 상관관계

응답자의 한국어 구사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구사능력 단계는 모두 5단계로 나누었다. 응답자는 263사례였는데, 응답자의 한국어구사 능력이 좋을수록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0-3>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응답자의 한국어구사능력과의 관계

| 한국어 구사 능력 | 산재보험 적용 응답자수 비율 | 산재보험 미적용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 합계 비율 |
|--------------------------------------|-----------------------|------------------------|--------------|
| 한국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 21 58.3 | 16 41.7 | 36 100.0 |
| 한국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 30 60.0 | 20 40.0 | 50 100.0 |
| 한국말을 약간 알아들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 27 60.0 | 18 40.0 | 45 100.0 |
| 한국말을 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뜻을 대강 전달할 수 있다. | 22 53.7 | 19 46.3 | 41 100.0 |
|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 61 67.0 | 30 33.0 | 91 100.0 |
| 응답자 합계/평균 | 161 59.2 | 102 38.8 | 263 100.0 |

20) 산재보상보험법 미적용 이유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문항 중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에는 2000년 7월 이전 산재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 시기였

을 때, 회사의 규모가 4인 미만이어서 당연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하였다.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처리가 가능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응답자는 158 사례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한 사례가 82사례, 비율로 51.9%였다.

<표 11> 산재보상보험법 미적용 이유

| 산재보상보험법 미적용 이유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모르고 있었다. | 27 | 17.1 |
| 회사에서 거부했다. | 82 | 51.9 |
| 회사와 협상하여 보상금을 받고 포기했다. | 49 | 31.0 |
| 합 계 | 158 | 100.0 |

21) 산재보상보험의 처리주체

산재보상보험법의 절차를 누가 해주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226사례였는데, 가장 많은 수가 142사례, 62.8%였던 상담지원단체였다. 회사가 해주었다는 경우는 35.8%였다. 가족/친구/스스로 산재보험절차를 밟았다는 답변도 1 사례씩 있었다. 그런데 실태조사 중에 분명히 상담지원단체에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과 접촉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하도록 해주었지만 당사자는 회사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등의 협조를 해준 점을 보고 회사에서 해주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따라서 회사가 해주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담지원단체가 해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표 12> 산재보상보험의 처리주체

| 산재보상보험처리주체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회사 | 81 | 35.8 |
| 상담지원단체 | 142 | 62.8 |
| 가족/친구/나 스스로 | 3 | 1.2 |
| 합 계 | 226 | 100.0 |

22) 산재보상보험의 처리주체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산재보상보험 처리주체와 산재발생 당시 체류자격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214 사례였다. 그 결과 합법체류자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담지원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12-1> 산재보상보험의 처리주체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처리주체 |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
|---------------|------------|------------|------------|----------------|---|-----|-----|-------|
| | 회사 | 상담지원단체 | 가족·친지 등 | | | | | |
| |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 | | | |
| 합법체류자 | 10 | 62.5 | 5 | 31.3 | 1 | 6.3 | 16 | 100.0 |
| 불법체류자 | 65 | 32.8 | 131 | 66.2 | 2 | 1.0 | 198 | 100.0 |
| 합 계 | 75 | 35.0 | 136 | 63.6 | 3 | 1.4 | 214 | 100.0 |

23)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던 응답자의 치료비 부담주체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였는지에 응답자는 173사례였다. 응답자의 73.6%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9.1%는 자신이 일부 혹은 전액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치료중인 응답자의 치료비 부담주체 1

| 치료비 부담주체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 131 | 73.6 |
| 일부는 회사가 지불하고 일부는 내가 지불했다. | 18 | 10.1 |
| 회사에서 부담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했다 | 6 | 3.4 |
| 모두 내가 부담했다. | 10 | 5.6 |
|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였다. | 13 | 7.3 |
| 합 계 | 178 | 100.0 |

24)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 치료비 부담주체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의 치료비 부담주체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46사례였는데, 응답자의 37.7%인 55사례가 본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답하였다. 62.3%에 해당하는 91사례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답하였다.

<표 13-1> 치료비 부담주체 2

| 치료비 부담주체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 91 | 62.3 |
| 일부는 회사가 지불하고 일부는 내가 지불했다. | 23 | 15.8 |
| 회사에서 부담하기는 했으나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했다. | 5 | 3.4 |
| 모두 내가 부담했다. | 27 | 18.5 |
| 합 계 | 146 | 100.0 |

25) 잔존장해 유무

치료종결 후 잔존장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문항은 실태조사 당시 치료가 끝난 사람에 한해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319사례였다. 이 중 장해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283사례로 88.7%였다.

<표 14> 잔존장해 유무

| 잔존장해유무 | 사례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장해가 남았다. | 283 | 88.7 |
| 장해가 남지 않았다. | 36 | 11.3 |
| 합계 | 319 | 100.0 |

27) 산재치료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은 총 18개의 예시 문항을 주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개 문항을 중복 선택하게 하였다. 기재한 사례는 중복응답을 모두 합계하여 응답자는 254사례였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첫 번째로 힘들어했던 점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이 '산재보험승인이 날 때까지 생활비가 없었다'로 24.8%였다. 전체 문항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생활비부족·치료비부담 등 돈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한 경우가 42사례, 40.0%를 차지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나서 돈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두 번째로 힘들어했던 점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이 '상처부위가 아팠다'는 문항과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문항으로 각각 16사례, 19.3%였다. 전체 문항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잔존장해에 대한 염려·재취업에 대한 염려·고국송환에 대한 염려 등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25사례, 30.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세 번째로 힘들어했던 점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이 '본국의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으로 19사례, 28.8%였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생활비·치료비 등 줄어든 수입과 관련된 문제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두 번째로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었으며, 세 번째로 본국의 가족들의 염려였다.

<표 15> 산재치료과정에서 첫 번째로 힘들었던 점

| 애로사항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산재보험승인이 날 때까지 생활비가 없었다. | 26 | 24.8 |
| 상처부위가 아팠다. | 18 | 17.1 |
|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부족했다. | 12 | 11.4 |
| 신체장애가 남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다. | 11 | 10.5 |
| 내용을 잘 몰라 불안했다. | 9 | 8.6 |
| 회사에서 신뢰를 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7 | 6.7 |
| 산재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 5 | 4.8 |
| 기 타 | 4 | 3.9 |
| 산재보험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 4 | 3.8 |
| 산재인정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 3 | 2.9 |
|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 3 | 2.9 |
| 본국의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이 걸렸다. | 2 | 1.9 |
| 산재보험처리 후 고국으로 송환될까 걱정되었다. | 1 | 1.0 |
| 합 계 | 105 | 100.0 |

<표 15-1> 산재치료과정에서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

| 애로사항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 16 | 19.3 |
| 상처부위가 아팠다. | 16 | 19.3 |
| 내용을 잘 몰라 불안했다. | 8 | 9.6 |
| 회사에서 신뢰를 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8 | 9.6 |
| 신체장애가 남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다. | 7 | 8.4 |
|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부족했다. | 6 | 7.2 |
| 산재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 6 | 7.2 |
| 본국의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이 걸렸다. | 5 | 6.0 |
| 기 타 | 3 | 3.6 |
| 병원이 불친절하였다. | 2 | 2.4 |
| 산재보험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 2 | 2.4 |
| 산재인정을 받는 절차가 복잡했다. | 1 | 1.2 |
| 치료받는 동안 고국으로 송환될까 걱정되었다. | 1 | 1.2 |
| 산재보험처리후 고국으로 송환될까 걱정되었다. | 1 | 1.2 |
| 병원에서 치료를 빨리 끝내려고 하였다. | 1 | 1.2 |
| 합 계 | 83 | 100.0 |

〈3〉 산재 관련 정보의 인지특성

<표 15-2> 산재치료과정에서 세 번째로 힘들었던 점

| 애로사항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본국의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이 걸렸다. | 19 | 28.8 |
| 상처부위가 아팠다. | 10 | 15.2 |
|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 8 | 12.1 |
| 회사에서 신뢰를 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 8 | 12.1 |
| 신체장애가 남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다. | 5 | 7.6 |
| 내용을 잘 몰라 불안했다. | 4 | 6.1 |
| 기타 | 3 | 4.5 |
| 산재보험처리후 고국으로 송환될까 걱정되었다. | 2 | 3.0 |
| 병원이 불친절하였다. | 2 | 3.0 |
|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월급이 줄어들어 생활비가 부족했다. | 2 | 3.0 |
| 치료가 부실하였다. | 1 | 1.5 |
| 치료받는 동안 당국의 단속에 걸릴까 걱정되었다. | 1 | 1.5 |
| 산재보험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 1 | 1.5 |
| 합계 | 66 | 100.0 |

28) 안전교육 사전 학습 관련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60사례였다. 문항 중 '대충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대개의 경우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받았기보다 작업지시의 성격을 띤 내용이 많았는데, 이 정도라도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43.8%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법적인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다.

<표 16> 안전교육 사전 학습 관련

| 안전교육사전학습관련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았다. | 14 | 8.8 |
| 대충 안전교육을 받았다. | 56 | 35.0 |
| 안전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 | 90 | 56.3 |
| 합계 | 160 | 100.0 |

29) 안전교육 사전 학습 관련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안전교육 사전학습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160사례였다. 분석에서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았다'와 '대충 안전교육을 받았다'를 조금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받았다'에 포함시켰고, '안전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의 경우를 '받지 못했다'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합법체류자의 안전교육 사전학습 비율이 불법체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았다. 그 외의 인적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별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표 17> 안전교육 사전 학습 관련과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안전교육 받았다. | | 안전교육 받지 못했다.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응답자수 | 비율 | 응답자수 | 비율 | |
| 합법체류자 | 6 | 30.0 | 14 | 70.0 | 20 100.0 |
| 불법체류자 | 64 | 45.7 | 76 | 54.3 | 140 100.0 |
| 합계 | 70 | 43.8 | 90 | 56.3 | 160 100.0 |

30) 작업의 위험요인 사전인지 정도

자신이 해야 할 작업에 산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74사례였다. 잘 알고 있었다에 응답한 비율이 15사례, 8.6%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93사례, 53.5%가 거의 모르고 있었거나 전혀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작업의 위험성 사전인지정도

| 위험요인 사전인지 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중 비율(%) |
|--------------|------|------------|
| 잘 알고 있었다. | 15 | 8.6 |
| 대강은 알고 있었다. | 66 | 37.9 |
| 거의 모르고 있었다. | 33 | 19.0 |
| 전혀 몰랐다. | 60 | 34.5 |
| 합계 | 174 | 100.0 |

31)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와 국적간의 관계

위험요인 사전인지 여부와 국적간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응답자는 174사례였다. 그 결과 중동 및 기타지역에서 온 산재피해자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중국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표 18-1>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와 국적간의 관계

| 국 적 | 위험요인 사전인지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 | |
| |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
| 중 국 | 31 57.4 | 23 42.6 | 54 100.0 |
| 동남아시아 | 37 44.6 | 46 55.4 | 83 100.0 |
| 구 소연방 및 동구 | 4 33.3 | 8 66.7 | 12 100.0 |
| 중동 및 기타 | 9 36.0 | 16 64.0 | 25 100.0 |
| 합 계 | 81 46.6 | 93 53.4 | 174 100.0 |

32)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와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관계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와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170사

례였다. 분석결과 한국어구사능력이 뛰어날수록 위험요인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18-2> 위험요인의 사전인지 여부와 한국어 구사능력간의 관계

| 한국어 구사능력 | 위험요인 사전인지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 | |
| | 응답자수 비율 | 응답자수 비율 | |
| 한국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 6 25.0 | 18 75.0 | 24 100.0 |
| 한국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 13 39.4 | 20 60.6 | 33 100.0 |
| 한국말을 약간 알아들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 14 43.8 | 18 56.3 | 32 100.0 |
| 한국말을 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뜻을 대강 전달할 수 있다. | 14 50.0 | 14 50.0 | 28 100.0 |
|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 31 58.5 | 22 41.5 | 63 100.0 |
| 응답자 합계/평균 | 78 45.9 | 92 54.1 | 170 100.0 |

33) 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228사례였다. 전체 응답자의 52.6%가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서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특이한 것은 다른 문항과 연관지어를 때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정작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연령/국적/재외동포 여부/학력/한국어구사능력 등으로 분류하여도 별다른 경향이나 특징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19> 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

| 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 43 | 18.9 |
| 한국인이나 주변의 외국인들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 30 | 13.2 |
| 사고가 난 후 회사나 병원에서 알려주어 알았다. | 35 | 15.4 |
| 사고가 난 후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서 알았다. | 120 | 52.6 |
| 합 계 | 228 | 100.0 |

34) 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226사례였다. 이 분석에서는 '한국인이나 주변의 외국인들에게서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다.'와 '사고가 난 후 회사나 병원에서 알려주어 알았다.', '사고가 난 후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서 알았다'를 시차와 알게 된 경로의 차이는 있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단순화 시켜 '알고 있었다'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의 인지비율이 14사례, 60.9%로 불법체류자의 169사례, 83.3%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표 19-1> 산재보상보험법 인지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산재보상보험법 인지 여부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모르고 있었다. | 알고 있었다. | |
| | 응답자수 | 비율 | |
| 합법체류자 | 9 | 39.1 | 14 60.9 |
| 불법체류자 | 34 | 16.7 | 169 83.3 |
| 합 계 | 43 | 19.0 | 183 81.0 |
| | 23 | 100.0 | 226 100.0 |

〈4〉 사후관리문제/한국에서의 재취업/귀국/귀국시 취업/재활교육 관련

35) 현재 치료중인 응답자의 재취업의지

현재 치료중인 경우의 재취업의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66사례였다. 이 중 귀국하거나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은 27.3%였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재취업하기를 원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27.2%는 산재를 당했던 공장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45.5%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하였다.

36) 치료종결 후 재취업 관련

치료가 종결된 응답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202사례였다. 이 중 9.7%가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할 생각이 없었고 나머지 90.3%는 취업하였다. 이 중 사고가 난 공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28.7%에 불과하였다.

<표 20> 현재 치료중인 응답자의 재취업의지

| 치료중인 응답자의 재취업의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전에 일하던 공장에 취업하고 싶다 | 15 | 22.7 |
| 전에 일하던 공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사장이 거부할 것 같다. | 3 | 4.5 |
| 다른 공장에서 일할 생각이다. | 20 | 45.5 |
| 신체장애 때문에 취업하는 게 힘들 것 같다. | 10 | 15.2 |
| 고국으로 귀국할 것이다. | 8 | 12.1 |
| 합 계 | 66 | 100.0 |

<표 21> 치료종결 후 재취업 관련

| 치료종결후 재취업한 곳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사고가 난 공장에서 다시 취업하였다. | 58 | 28.7 |
|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 91 | 45.0 |
| 취업하지 못했다. | 46 | 22.8 |
| 취업할 생각이 없다. | 7 | 3.5 |
| 합 계 | 202 | 100.0 |

37)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

치료종결자 중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24사례였다. 이 중 신체장애 때문에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었던 비율은 46사례, 25.8%였다. 응답자의 25%를 차지했던 기타의 경우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자의에 의해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에서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29.0%에 불과하였으며, 71%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외부 사정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였다.

38)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10사례였다. 이 중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여서 대개의 산재피해자가 재취업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

| 산재발생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그공장에서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 36 | 29.0 |
|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다. | 25 | 20.2 |
| 신체장애 때문에 전에 하던 일을 할 수 없었다. | 32 | 25.8 |
| 기타 | 31 | 25.0 |
| 합계 | 124 | 100.0 |

<표 23>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미친 영향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6 | 32.7 |
|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 51 | 46.4 |
| 취업은 할 수 있었지만 월급수준이 낮아졌다. | 7 | 6.4 |
| 신체장애 때문에 힘이 들어 취업할 수 없었다. | 16 | 14.5 |
| 합계 | 110 | 100.0 |

39) 월급여 변화

산재사고 후 재취업하였을 때 월급여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02사례였다. 이중 늘거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79.4%였다. 줄어든 경우는 20.6%였다. 의외의 결과였는데,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중장해가 아닌 경우 취업하였을 때 작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월급여도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표 24> 월급여 변화

| 월급여 변화사항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늘었다. | 29 | 28.4 |
| 같다. | 52 | 51.0 |
| 줄었다. | 21 | 20.6 |
| 합계 | 102 | 100.0 |

40) 월급여 변화 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과 월급여 변화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97사례였다. 그 결과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였던 경우 월급여가 늘어난 경우가 50%인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월급여가 늘어난 경우가 28.1%였다.

대다수가 산업연수생이었던 합법체류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의의는 크지 않다.

<표 25> 월급여 변화 여부와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월급여 변화 |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늘었다. 응답자 비율 | 같다. 응답자 비율 | 줄었다. 응답자 비율 | |
| 합법체류자 | 4 50.0 | 3 37.5 | 1 12.5 | 8 100.0 |
| 불법체류자 | 25 28.1 | 45 50.6 | 19 21.3 | 89 100.0 |
| 합계 | 29 29.9 | 48 49.5 | 20 20.6 | 97 100.0 |

41) 치료종결 후 귀국여부

모든 치료 혹은 절차가 끝난 후 귀국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80사례였다. 이 중 즉시 귀국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2.2%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취업하던가 아예 귀국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표 26> 치료 종결 후 귀국여부

| 치료 종결 후 귀국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즉시 귀국하겠다. | 40 | 22.2 |
| 한국에서 좀더 일을 하다가 귀국할 생각이다. | 83 | 46.1 |
|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귀국할 생각이다. | 46 | 25.6 |
| 귀국할 생각이 없다. | 11 | 6.1 |
| 합계 | 180 | 100.0 |

42) 본국에서의 취업 가능성

산재사고 후 귀국하였을 때 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42사례였다. 이 중 신체장애로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9.7%, 자영업이든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3.1%, 알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47.2%였다. '취업 불가능 예측' 답변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한 66.9%에 해당하는 산재피해자가 귀국 후 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불안한 상태였다.

<표 27> 본국에서의 재취업 가능성

| 본국에서 재취업 가능성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신체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28 | 19.7 |
| 장사 등 자영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 26 | 18.3 |
|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1 | 14.8 |
|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 67 | 47.2 |
| 합 계 | 142 | 100.0 |

43) 본국에서의 취업가능성과 잔존장애 유무간의 관계

본국에서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른 인적 특성과의 관계 분석에서 별 특징이 없었는데 잔존장애 유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잔존장애 유무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자는 96사례였다. 잔존장애가 있는 경우 알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이 58.3%였다. 반면 잔존장애가 없는 경우 76.9%가 자영업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표 27-1> 본국에서의 취업가능성과 잔존장애 유무간의 관계

| 잔존장애여부 | 본국에서의 재취업 가능성 여부 | |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 취업불가능 | 자영업·취업가능 | 알 수 없다. | 응답자 비율 | | |
|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 | |
| 장해있다 | 10 20.8 | 10 20.8 | 28 58.3 | 48 | 100.0 | |
| 장해없다 | | 10 76.9 | 3 23.1 | 13 | 100.0 | |
| 장해있으나 미판정 | 10 28.6 | 13 37.1 | 12 34.3 | 35 | 100.0 | |
| 합계 | 20 20.8 | 33 33.4 | 43 44.8 | 96 | 100.0 | |

44) 직업재활교육의 인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재활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63사례였다. 응답자의 82.8%가 직업재활교육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는 경우가 많았다.

<표 28> 직업재활교육의 인지 여부

| 직업재활교육 인지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들은 적이 없다. | 135 | 82.8 |
| 알고 있었다. | 28 | 17.2 |
| 합 계 | 382 | 100.0 |

45) 직업재활교육의 인지 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직업재활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162사례였다. 그 결과 산재발생시 불법체류자가 직업재활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표 28-1> 직업재활교육의 인지 여부와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직업재활교육인지 여부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들은 적이 없다. | 알고 있다. | |
|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
| 합법체류자 | 18 94.7 | 1 5.3 | 19 100.0 |
| 불법체류자 | 116 81.1 | 27 18.9 | 143 100.0 |
| 합 계 | 134 62.7 | 28 17.3 | 162 100.0 |

46) 직업교육의 참여의지

만약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직업교육을 받겠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142사례였다. 응답자의 71.8%가 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많은 수가 '몸이 아파서',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귀국 해야 하기 때문에'의 이유를 기재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기보다 여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29> 직업교육의 참여의지

| · 교육 참여여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받겠다. | 102 | 71.8 |
| 받지 않겠다. | 40 | 28.2 |
| 합 계 | 142 | 100.0 |

47) 직업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분야

만약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산재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92사례였다. 응답결과 중 '광고 디자인과정'과 '정보통신과정'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문항을 컴퓨터 관련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67.4%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컴퓨터 관련 첨단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표 30> 직업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분야

| 받고 싶은 교육분야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광고디자인 과정 (컴퓨터그래픽/광고물제작/스크린인쇄/홈페이지제작 등) | 32 | 34.8 |
| 의상디자이너 과정 (패션디자인/홈패션제작/의류수선/세탁훈련 등) | 11 | 12.0 |
| 산업설비 과정 (보일러취급기능/고압가스취급기능/냉동기취급기능 등) | 19 | 20.7 |
| 정보통신 과정 (웹마스터/웹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래밍 등) | 30 | 32.6 |
| 합 계 | 92 | 100.0 |

2부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1) 응답자의 성별분류

응답자의 성별에 대한 질문에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538 사례였다. 이 중 남성이 512명으로 95.2%였고 여성이 26명이었다.

<표 31> 응답자의 성별통계

| 성별 구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남성 | 512 | 95.2 |
| 여성 | 26 | 4.8 |
| 합계 | 538 | 100 |

2) 입국시 비자의 종류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29 사례였다. 가장 많은 수가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던 경우로 31.7%에 해당하는 136사례였다.

<표 32> 입국시 비자의 종류

| 입국시 비자의 종류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D-3-2~D-3-6) | 136 | 31.7 |
| 관광통과(B-2) | 118 | 27.5 |
| 단기상용(C-2) | 76 | 17.7 |
| 방문동거(F-1) | 51 | 11.9 |
| 해외투자관련산업연수(D-3-1) | 17 | 4.0 |
| 기타 | 11 | 2.6 |
| 밀입국 | 10 | 2.3 |
| 사증면제(B-1) | 6 | 1.4 |
| 단기종합(C-3) | 4 | 0.9 |
| 합 계 | 429 | 100 |

3) 응답자의 국적분류

응답자들의 국적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는 539사례였다. 이중 가장 많은 국적이 30.6%를 차지한 중국이었다.

<표 33> 응답자들의 국적

| 국적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중국 | 165 | 30.6 |
| 방글라데시 | 98 | 18.2 |
| 파키스탄 | 45 | 8.3 |
| 필리핀 | 37 | 6.9 |
| 타이 | 33 | 6.1 |
| 이란 | 25 | 4.6 |
| 미얀마 | 19 | 3.5 |
| 몽골 | 18 | 3.3 |
| 인도 | 16 | 3.0 |
| 기타 | 15 | 2.8 |
| 인도네시아 | 11 | 2.0 |
| 네팔 | 10 | 1.9 |
| 스리랑카 | 10 | 1.9 |
| 베트남 | 9 | 1.7 |
| 가나 | 8 | 1.5 |
| 나이지리아 | 7 | 1.3 |
| 카자흐스탄 | 5 | 0.9 |
| 우즈베키스탄 | 4 | 0.7 |
| 러시아 | 4 | 0.7 |
| 합계 | 539 | 100 |

기타 나라의 경우 폐루/몰도바/ 등이었다. 국적을 크게 중국(1) 동남아시아(2), 구 소연방 및 동구지역(3), 중동 및 기타(4) 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보았다. 이하의 분석시 국적은 권역별로 나눈 기준을 적용하였다.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권역은 288사례, 53.4%를 차지한 동남아시아 권역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165사례, 30.6%였던 중국이었으며, 세 번째가 55사례, 10.2%였다. 구 소연방/동구지역의 국적자가 31사례, 5.85로 가장 수가 적었다. 이를 재외동포와 비재외동포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응답자는 525사례였다. 이 중 재외동포가 133명으로 25.3%였고 비재외동포가 74.4%였다.

4) 산재발생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산재 발생 당시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488사례였다. 이 중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가 49명이었으며 불법체류자가 439명으로 응답자의 90%를 차지하였다.

<표 34> 산재발생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합법체류자 | 49 | 10 |
| 불법체류자 | 439 | 90 |
| 합계 | 488 | 100 |

5) 산재 발생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산재 발생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84사례였다. 30대(43.4%)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78.9%가 2,30대였다.

<표 35> 산재 발생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

| 연령 | 사례수 | 응답자중 비율(%) |
|--------|-----|------------|
| 20대 | 172 | 35.5 |
| 30대 | 210 | 43.4 |
| 40대 | 72 | 14.9 |
| 50대 이상 | 30 | 6.2 |
| 합계 | 484 | 100 |

6) 응답자의 학력

응답자가 본국에서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545사례 중 기재설문지는 147사례였다. 가장 많은 수(39.5%)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었다.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응답자의 학력을 세 종류로 단순화하면 중학교 졸업이하가 35사례에 23.8%, 고등학교졸업이 58사례, 39.5%, 초급대학이상 학력이 54사례, 36.7%였다.

<표 36> 응답자의 학력

| 학력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 1 | 0.7 |
| 초등학교 | 14 | 9.5 |
| 중학교 | 20 | 13.6 |
| 고등학교 | 58 | 39.5 |
| 초급대학(2년제) | 18 | 12.2 |
| 대학교(4년제) | 36 | 24.5 |
| 대학원 석사과정 | 0 | 0 |
| 대학원 박사과정 | 0 | 0 |
| 합계 | 147 | 100 |

7) 산재피해를 입은 연도

산재피해를 입은 연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545 사례 중 응답자는 521명이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응답이 나왔다.

<표 37> 산재피해를 입은 연도

| 산재피해연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996년 이전 | 27 | 5.2 |
| 1997년 ~ 1998년 | 96 | 18.4 |
| 1999년 ~ 2000년 | 198 | 38.0 |
| 2001년 ~ 2002년 | 200 | 38.4 |
| 합계 | 521 | 100 |

8) 산재발생시 응답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산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응답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277명이었다. 한국말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가 33.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제외동포의 숫자가 많아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9) 비재외동포중 한국어 구사능력

비재외동포 중 산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응답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175사례였다.

<표 38> 산재발생시 응답자들의 한국어구사능력

| 한국어구사능력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한국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 39 | 14.1 |
| 한국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 53 | 19.5 |
| 한국말을 약간 알아들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할 수 있다. | 49 | 17.7 |
| 한국말을 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뜻을 대강 전달할 수 있다. | 41 | 14.8 |
|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 94 | 33.9 |
| 합계 | 277 | 100 |

<표 38-1> 비재외동포 중 산재발생시 한국어 구사능력

| 한국어 구사능력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한국말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 36 | 20.6 |
| 한국말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으나 전혀 말하지 못했다. | 53 | 30.3 |
| 한국말을 약간 알아들을 수 있고 최소한의 의사표현할 수 있다. | 48 | 27.4 |
| 한국말을 꽤 알아들을 수 있고 내 뜻을 대강 전달할 수 있다. | 33 | 18.9 |
|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고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 5 | 2.9 |
| 합계 | 175 | 100 |

10)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산재사고를 당하였던 사업장의 소재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545사례 중 기재설문지는 493사례였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61%로 가장 많았다.

11) 치료 상황

실태조사 시점에서 응답자들의 치료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404명이었다. 이 중 조사시점에 치료가 모두 끝난 사례는 74.5%였다.

<표 39>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경기도 | 304 | 61.7 |
| 서울특별시 | 79 | 16.0 |
| 인천광역시 | 69 | 14.0 |
| 충청남도 | 12 | 2.4 |
| 충청북도 | 6 | 1.2 |
| 경상북도 | 5 | 1.0 |
| 경상남도 | 5 | 1.0 |
| 광주광역시 | 4 | 0.8 |
| 강원도 | 2 | 0.4 |
| 대전광역시 | 2 | 0.4 |
| 대구광역시 | 2 | 0.4 |
| 전라북도 | 1 | 0.2 |
| 울산광역시 | 1 | 0.2 |
| 제주도 | 1 | 0.2 |
| 합계 | 493 | 100 |

<표 40> 치료 상황

| 치료상황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입원중이다. | 28 | 6.9 |
| 사고후 입원하였지만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중이다. | 36 | 8.9 |
|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였다(또는 하고 있다.) | 13 | 3.2 |
| 치료가 모두 끝났다. | 301 | 74.5 |
| 완치는 안되었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 26 | 6.4 |
| 합계 | 404 | 100.0 |

(2) 취업현황

12) 산재발생 당시 근무 사업장의 업종별 분류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해보았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76명이었다. 설문 문항에는 모두 26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를 6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41> 산재피해당시 근무 사업장의 업종별 분류

| 업종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금속·기계·장비업종 | 139 | 29.2 |
| 건설업종 | 97 | 20.4 |
| 화학·섬유업종 | 96 | 20.2 |
| 가구·목재·종이·기타 제조업 | 79 | 16.6 |
| 음식료제조 및 음식업 | 21 | 4.4 |
| 기타 | 44 | 9.2 |
| 합계 | 476 | 100 |

13) 업종에 따른 응답자의 국적 분포

업종과 국적간의 관계에서 국적은 재외동포인지 비재외동포인지 여부만 분석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60명이었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취업하였던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비재외동포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금속·기계·장비업종에 취업하였다.

<표 41-1> 업종에 따른 응답자의 국적분포

| 업종 | 응답자수 | 재외동포 | | 비재외동포 | |
|-----------------|------|--------|-------|--------|-------|
| |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수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수 |
| 금속·기계·장비 | 134 | 15 | 11.7 | 119 | 35.8 |
| 건설 | 94 | 80 | 62.5 | 14 | 4.2 |
| 화학·섬유 | 92 | 9 | 7.0 | 83 | 25.0 |
| 가구·목재·종이 기타 제조업 | 79 | 5 | 3.9 | 74 | 22.3 |
| 음식료제조 및 음식업 | 19 | 8 | 6.3 | 11 | 3.3 |
| 기타 | 42 | 11 | 8.6 | 31 | 9.3 |
| 합계 | 460 | 128 | 100.0 | 332 | 100.0 |

14) 업종에 따른 응답자의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분포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33명이었다.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금속·기계·장비 업종에 19명이 취업하였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역시 금속·기계·장비 업종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비율로 체류자격을 보았을 때, 건설업이 불법체류자가 96.7%를 차지하였고 음식료제조 및 음식업이 합법체류자 비율이 높았다.

<표 41-2> 업종에 따른 응답자의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분포

| 업 종 | 합법체류 | | 불법체류 | | 응답자합계 비율(%) |
|-----------------|-----------|-----------|------|-------|----------------|
| | 응답자 비율 | 응답자 비율 | | | |
| 금속·기계·장비 | 19 | 14.8 | 109 | 85.2 | 128 100.0 |
| 건설 | 3 | 3.3 | 87 | 96.7 | 90 100.0 |
| 화학·섬유 | 12 | 13.6 | 76 | 86.4 | 88 100.0 |
| 가구·목재·종이 기타 제조업 | 5 | 7.0 | 66 | 93.0 | 71 100.0 |
| 음식료제조 및 음식업 | 3 | 16.7 | 15 | 83.3 | 18 100.0 |
| 기 타 | | | 38 | 100.0 | 38 100.0 |
| 합 계 | 42 | 9.7 | 391 | 90.3 | 433 100.0 |

4) 사업장 규모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 조사하였다. 규모는 채용한 노동자(한국인+외국인이주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368사례였다. 분석 결과 평균 고용 노동자 수는 $12명 \pm 1.9명$ 이었다. 이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평균수는 $6.5명 \pm 10명$ 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 고용노동자수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2> 사업장 규모

| 사업장규모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5인 미만 | 43 | 11.7 |
| 5인 ~ 29인 | 275 | 74.7 |
| 30인 ~ 49인 | 17 | 4.6 |
| 50인 ~ 99인 | 23 | 6.3 |
| 100인 이상 | 10 | 2.7 |
| 합계 | 368 | 100% |

5) 1일 근로시간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273사례였다. 가장 많은 응답이 1일 12시간 근로였다. 18시간 이상 근로도 2명이나 응답하였다. 1일 근로시간이 10~12시간인 경우가 202사례, 71.0%로 절대다수였다.

<표 43> 1일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8시간 | 21 | 7.7 |
| 9시간 | 34 | 12.5 |
| 10시간 | 53 | 19.4 |
| 11시간 | 50 | 18.3 |
| 12시간 | 91 | 33.3 |
| 13~15시간 | 21 | 7.7 |
| 16~18시간 | 1 | 0.4 |
| 18시간 이상 | 2 | 0.7 |
| 합 계 | 27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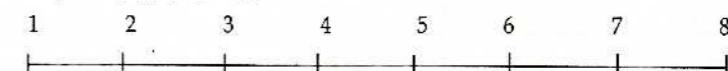
6) 1일 근로시간과 국적간의 상관관계

근로시간과 국적간의 관계를 보았다. 응답자는 272사례였으며 국적간의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1일 근로시간을 8개 단위로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지수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재외동포·동남아시아 권역·구소연방 및 동구권역·중동 및 기타권역의 순으로 1일 근로시간이 길었다.

<표 43-1> 1일 근로시간과 국적간의 관계

| 국적 | 응답자수 | 1일 평균 작업시간 지수*(시간) |
|------------|------|--------------------|
| 중국 | 59 | 3.49 (약 10시간 30분) |
| 동남아시아 | 154 | 3.82 (약 10시간 51분) |
| 구 소연방 및 동구 | 21 | 4.43 (약 11시간 25분) |
| 중동 및 기타 | 38 | 4.24 (약 11시간 15분) |
| 응답자합계/평균 | 272 | 3.86 (약 10시간 53분) |

* 1일 평균 작업시간 지수 :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15시간 16-18시간 18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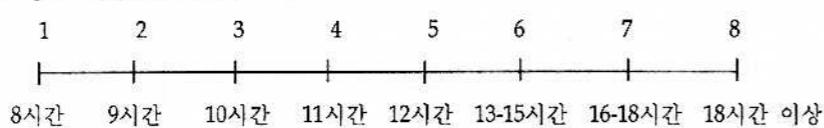
7) 1일 근로시간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근로시간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는 266사례였다. 이 분석에서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보다 1일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표 43-2> 1일 근로시간과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응답자수 | 1일 평균 작업시간 지수*(시간) |
|------------|------|--------------------|
| 합법체류자 | 28 | 4.39 (약 11시간 18분) |
| 불법체류자 | 238 | 3.80 (약 10시간 48분) |
| 응답자합계/평균 | 266 | 3.86 (약 10시간 53분) |

* 1일 평균 작업시간 지수 :



8) 월 급여현황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63사례였다. 가장 많은 비율이 100~149만원이었는데, 이는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의 수가 많은 탓인 듯하다. 건설업 등에서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44> 월 급여현황

| 월 급여현황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49만원이하 | 11 | 2.4 |
| 50~59만원 | 15 | 3.2 |
| 60~69만원 | 48 | 10.4 |
| 70~79만원 | 101 | 21.8 |
| 80~89만원 | 92 | 19.9 |
| 90~99만원 | 56 | 12.1 |
| 100~149만원 | 110 | 23.8 |
| 150만원이상 | 30 | 6.5 |
| 합계 | 463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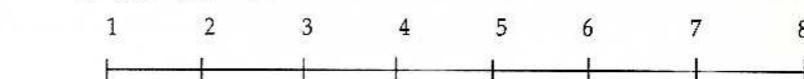
9) 월 급여와 국적간의 상관관계

국적에 따라 월급여가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총 545사례중 응답자는 459 사례였다. 국적간의 월급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월 평균 급여 수준을 8개 단위로 체크하도록 하여 이를 지수화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국적의 경우가 타 국적 보다 훨씬 높았다.

<표 44-1> 월급여와 국적간의 관계

| 국적 | 응답자수 | 평균월급여 지수*(월임금) |
|-----------|------|-----------------|
| 중국 | 132 | 6.55 (약 95만원가량) |
| 동남아시아 | 249 | 4.61 (약 76만원가량) |
| 구소연방 및 동구 | 30 | 4.23 (약 73만원가량) |
| 중동 및 기타 | 48 | 4.94 (약 79만원가량) |
| 응답자합계/평균 | 459 | 5.17 (약 82만원가량) |

* 월 평균 임금 지수 :



49만원이하 50-59만원 60-69만원 70-79만원 80-89만원 9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이상

10) 월급여와 재외동포 여부와의 상관관계

재외동포인지 아닌지에 따라 월급여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449 사례였다. 분석결과 재외동포의 월급여가 약 97만원으로 비재외동포의 약 77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표 44-2> 월급여와 재외동포간의 관계

| 월 급여 | 응답자 수 | 평균임금지수*(임금) |
|----------|-------|-----------------|
| 재외동포 | 109 | 6.74 (약 97만원가량) |
| 비 재외동포 | 340 | 4.72 (약 77만원가량) |
| 응답자합계/평균 | 449 | 5.21 (약 82만원가량) |

11) 월급여와 성별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는 457사례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월급여는 약 68만원으로 남성의 약 83만원보다 훨씬 적었다.

<표 44-3> 월급여와 성별간의 관계

| 성별 | 응답자수 | 평균임금지수*(월임금) |
|----------|------|-----------------|
| 남 | 434 | 5.25 (약 83만원가량) |
| 여 | 23 | 3.74 (약 68만원가량) |
| 응답자합계/평균 | 457 | 5.18 (약 82만원가량) |

12) 월급여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산재발생시 체류자격에 따른 월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응답자는 427사례였다. 그 결과 산재발생시 불법체류자였던 경우가 월급여가 훨씬 높았다.

<표 44-4> 월급여와 산재발생시 체류자격간의 관계

| 산재발생시 체류자격 | 응답자수 | 평균임금지수*(월임금) |
|------------|------|-----------------|
| 합법체류 | 41 | 3.95 (약 69만원가량) |
| 불법체류 | 386 | 5.31 (약 83만원가량) |
| 응답자합계/평균 | 427 | 5.18 (약 82만원가량) |

13) 한달 평균 휴일의 회수

응답자 160사례 중 가장 많은 수가 한 달에 4회 쉬다고 답했다. 그러나 1달에 1회 쉬다고 답한 경우가 9명, 휴일이 아예 없었다고 답한 경우도 6명이나 되었다.

<표 45> 한달 평균 휴일의 회수

| 한달 평균 휴일회수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1 회 | 9 | 5.6 |
| 2 회 | 19 | 11.9 |
| 3 회 | 7 | 4.4 |
| 4 회 | 95 | 59.4 |
| 5회 이상 | 14 | 8.8 |
| 불규칙적이다 | 10 | 6.3 |
| 휴일이 없었다. | 6 | 3.8 |
| 합 계 | 160 | 100.0 |

14) 산재를 당한 사업장 입사경로

산재를 당한 사업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총 545사례 중 응답자는 210사례였다. 가장 많은 수가 같은 나라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경우였다.

<표 46> 산재발생 사업장 입사경로

| 산재발생 사업장 입사경로 | 응답자수 | 응답자 중 비율(%) |
|--------------------|------|-------------|
| 산업연수생으로 배치받았다. | 31 | 14.8 |
| 같은 나라 친구의 소개 | 102 | 48.6 |
| 한국인 친구의 소개 | 26 | 12.4 |
| 직업소개하는 외국인의 소개 | 1 | 0.5 |
| 직업소개하는 한국인의 소개 | 24 | 11.4 |
| 광고를 보고 내가 직접 찾아갔다. | 12 | 5.7 |
| 기 타 | 14 | 6.7 |
| 합 계 | 210 | 100.0 |

III.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의 특징

1. 산재발생의 양태

-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 후 산재가 발생까지의 평균 기간은 1.9년이었다. 이 중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산재를 당한 사례가 22.7%, 1년만에 산재를 당하는 사례가 27.0%였다. 즉 49.7%가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안에 산재를 당하였다.
- 응답자의 56.5%가 통상 수습기간으로 두는 입사 3개월 안에 산재를 당하였다. 입사 후 1주일 안에 산재를 당하는 비율도 13.7%에 해당하였다. 입사 후 얼마만에 산재를 당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발생당시 대부분 산업연수생이었던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보다 더 빨리 산재를 당했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질수록 입사 후 산재발생시기가 빠르고, 1일 근로시간이 길수록 입사 후 산재발생시기가 빨라졌다. 또한 안전교육을 조금도 받지 않은 경우 입사 후 산재발생시기가 빨랐으며,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을수록 입사 후 산재발생시기가 빨랐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입사 후 빨리 산재를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는 오후 작업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산재사고의 양상에서 '기계 등에 신체를 김(협착)'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가 '깔림, 압착'이었다. 산재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안전장비(혹은 장치)가 없었다'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97.2%가 작업시간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적용과 관련하여

- 전체 응답자의 81.2%가 상담지원단체나 친지, 회사, 병원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52.6%가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서야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 것을 알았다.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가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이 불법체류자의 경우보다 낮았다.
- 응답자의 59.2%가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다. 산재발생시 불법체류자였던 경우가 합법체류자였던 경우보다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비율이 더 높았고, 응답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날수록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재사고 발생년도가 현재시점에 가까울수록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거부한 경우가 82.9%였다. 이 중 31.0%는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포기한 경우였다.

○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62.8%가 상담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산재보상보험 적용을 받았다. 회사가 산재보상보험법 처리를 해준 경우도 35.8%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실태조사 중에 분명히 상담지원단체에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과 접촉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하도록 해주었지만 당사자는 회사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등의 협조해준 점을 보고 회사에서 해주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회사가 해주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담지원단체가 해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였던 경우,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담지원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 많은 경우 회사에서 산재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는 지불하고 있었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던 경우 73.6%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19.1%는 자신이 일부 혹은 전액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 37.7%가 본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였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62.3%였다.

○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생활비·치료비 등 줄어든 수입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두 번째로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었으며, 세 번째로 본국의 가족들의 염려였다.

3. 안전교육과 작업의 위험요인 사전인지정도

- 대강이라도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8%에 불과하였다. 합법체류자의 안전교육 사전학습 비율이 불법체류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았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작업에 산재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가 응답자의 8.6%에 불과하였고, 응답자의 53.5%가 거의 모르고 있었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다. 중동 및 기타지역에서 온 산재피해자들의 작업위험요인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중국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날수록 작업위험요인 인지도가 높았다.

4.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치료중인 산재피해자의 72.8%가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27.3%만이 귀국하거나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치료가 종결된 산재피해자의 26.3%는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할 생각이 없었고 73.7%가 한국에서 재취업하였다. 이 중 사고가 난 공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28.7%에 불과하였다. 산재가 발생했던 공장에 재취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의에 의해 산재가 발생했던 공장에서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29.0%에 불과하였으며, 71%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정, 즉 해고나 신체장애, 혹은 회사의 부도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다른 공장에 재취업하였다.

○ 산재사고가 재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7.3%가 재취업이 어려웠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혹은 취업은 하였지만 월급여가 낮아진 경우였으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에 불과하였다.

○ 산재사고 후 재취업하였을 때 월급여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9.4%가 월급여가 늘거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산재사고 후 월급여가 줄어든 경우는 20.6%였다.

○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였던 경우 월급여가 들어나거나 같은 경우는 87.5%였는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월급여가 들어나거나 같은 경우가 78.7%였다. 이는 산재발생시 산업연수생이었던 합법체류자의 경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월급여가 늘어난 경우로 해석된다.

○ 산재사고 후 귀국하였을 때 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6.9%가 '취업불가능예측' 혹은 '알 수 없다'고 답하여 귀국 후 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불안한 상태였다. 자영업 혹은 취업가능예측을 한 응답자는 47.2%였다. 본국

에서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산재사고로 인한 잔존장애여부였다.

5. 산재피해자의 직업교육에 대해

○ 응답자의 82.8%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산재발생시 불법체류자가 직업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 응답자의 71.8%가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직업교육을 받겠다고 하였다. 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많은 수가 '몸이 아파서',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의 이유를 기재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기보다 여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산재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중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응답자의 67.4%가 컴퓨터 관련 첨단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의사디자이너과정은 11명 12.0%, 산업설비과정은 19명 20.7%가 받고 싶다고 하였다.

6.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5.2%, 여성이 4.8%였다.

○ 어떤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수가 업종단체추천 산업연수비자로 31.7%였고 두 번째가 27.5%였던 관광통과(B-2)비자였다.

산재발생 당시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대한 질문에서 불법체류자가 90%였다.

○ 응답자들의 국적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 중국적으로 30.6%, 두 번째가 방글라데시 18.2%, 세 번째가 파키스탄으로 8.3%였다. 국적을 크게 중국(1) 동남아시아(2), 구 소연방 및 동구지역(3), 중동 및 기타(4)의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권역은 동남아시아 권역으로서 53.4%였다. 가장